

의생명공학전공 학부 졸업 심사 내규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3일

의생명공학전공 전공주임 인

의생명공학전공 학부 졸업 심사 내규

제정 2024.12.18.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의생명공학전공 학부생의 졸업요건 중 졸업 심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신청자격) 졸업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험실을 배정 받은 자로서 도래하는 학기가 3학년 2학기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졸업심사 신청절차) 졸업심사를 희망하는 자는 심사 자격이 주어지면 학부 졸업 심사 신청 기간에 졸업 심사 신청서[별지1] 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는 3월, 9월 첫째주로 정한다.

제 4조(졸업심사 수행방법) 졸업심사는 실험·실습 결과발표 또는 총설 논문 발표로 하며, 각 심사 방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

□ 학부 졸업 논문 제출방식

수행방식	신청서 승인	운영담당	제출방식	제출서류
실험·실습 결과 발표	지도교수	지도교수	개인별	졸업논문 발표자료 1부. (PDF형식)
총설 논문 발표	지도교수	지도교수		

※총설 논문 발표는 5월,11월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실험실 배정 및 총설 논문 결정권은 지도교수에게 있음.

제 5조(졸업 심사 시기) 학부 졸업 심사는 5월, 11월 첫째주 금요일로 정한다.

제 6조(졸업심사 자격요건) 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8학기 이내에 졸업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7학기 이내에 1회 이상 졸업 심사에 응시한 이력이 있어야 함)

제 7조(심사방법 및 결과제출) 졸업 심사는 개인별 10분동안 실험 결과 또는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심사는 가부제로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심의를 거쳐 결과[별지2]를 전공주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심사위원구성) 졸업 심사는 전공 소속 전체 교원 중 지도교수 외 1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로 한다.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학년도 의생명공학전공 학부 졸업 심사 신청서

지도교수(서명)	접수일자(조교)

학 번:

학 년:

성명:

현재학기:

1. 실험·실습 주제 및 논문 제목 :

2. 발표 요지:

2. 지도교수:

위와 같이 졸업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
의
년

제 출 자 : (서명)

의생명공학전공 전공주임 귀하

[별지2]

○○○○학년도 의생명공학전공 학부 졸업 심사표

1. 심사신청자

소 속	학 번	성 명	현재학기	지도교수명	수행방식
					실험·실습/ 총설논문
실험·실습 주제 및 논문 제목:					

2. 심사 결과

심 사 결 과	판 정		
	심사위원명	합 격	불합격(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년 월 일

의생명공학전공 전공주임 (인)